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468
------	------

2026. 3. 1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김길영 의원(찬성자 19명)

나.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3. 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길영 의원)

1. 제안이유

- 2025년 7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으로 시장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스포츠데이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제4조제8호에 추가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윤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2025.7.14.자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데이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시가 추진하는 스포츠데이 사업의 재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의됨.

나. 체육진흥기금 현황

- 체육진흥기금은 서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0년 11월에 설치되었음.
- 202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20억 7천9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잠실야구장 및 서남권 돛구장 광고권 수입액의 60%인 74억 6천9백만원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등 46억 1천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2,079	
전 입 금	7,469	일반회계 출연금

<지출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2,079	
비 용 자 성	9,740	미래희망스포츠영재

이 자 수 입	1,835	공공예금, 예탁금 이자
예 치 금 수	2,775	전년도 예치금

사 업 비		육성 등 13개 사업
기 본 경 비	1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여 유 자 금	2,329	여유자금 공공예금 예치

- 지출은 전문체육 육성 15억 9천7백만원, 시민체육공간 확충 70억 3천3백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6억 2천9백만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4억 8천만원 등 13개 사업에 97억 3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다만 최근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는 적정 사업비 관리를 위해 2026년도에는 시설 개보수 등 안전예산 확보, 야구 관련 사업 등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동결 또는 감액하여 편성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조성액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은 없는지 정책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 개정안의 스포츠데이 활성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체육진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추이('20~'28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성액				집행액	조성액과 집행액의 차액	연도말 조성액
	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20년도	9,858	8,612	991	255	11,099	△1,241	54,711
2021년도	11,682	9,704	884	1,094	10,033	1,649	56,360
2022년도	11,561	9,058	1,612	891	11,455	106	56,466
2023년도	12,278	9,043	2,500	735	10,320	1,958	58,424
2024년도	10,287	7,250	2,450	587	11,146	△859	57,565

(단위 : 백만원)

2025년도(추정)	10,320	7,388	2,337	587	12,192	△1,872	55,693
2026년도(추정)	9,891	7,469	1,835	587	9,750	141	55,834
2027년도(추정)	9,891	7,469	1,835	587	9,750	141	55,975
2028년도(추정)	9,891	7,469	1,835	587	9,750	141	56,116

※ ('25~'26년) 조성액은 수입계획 기준 / ('27~'28년) 조성액은 '26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
 ('25~'26년) 집행액은 지출계획 기준 / ('27~'28년) 집행액은 '26년도와 동일하다고 가정

다. 스포츠데이 사업 현황

- 서울시 스포츠데이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가 개정되며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2025년 9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후속으로 개정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개인 연습사용료·전용사용료를 각각 30% 감면하도록 명시하였음.
- 이에 따라 스포츠데이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는 기 완료되어, 서울시는 2025년 11월 '시립체육시설 스포츠데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스포츠데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스포츠데이를 통해 시민들은 현재 10개 시립체육시설¹⁾의 입장료, 개인 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를 각각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스포츠데이 시행에 따른 예산 소요로는 세입예산의 감소만 있을 뿐 세출예산이 별도로 집행되지는 않는 상황임.

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기금의 용도(안 제4조제8호)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1)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구장, 장충체육관, 산악문화체험센터, 창동문화체육센터

스포츠데이 관련 사업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여 사업의 능동성·탄력성·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동 기금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점을 고려한다면, 시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동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 ----- -----. 1. ~ 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현행 제8호와 같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기 시행 중인 ‘시립체육시설 스포츠데이 시행계획’에 따른 감면 사업은 서울시 일반회계의 세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스포츠데이 관련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된 자치입법 해석 사례²⁾를 살펴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

2) 법제처 2022. 10. 5. 의견제시22-0251

문적·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집행부는 동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기금의 용도를 기금 설치 목적과 취지와 더불어 서울 체육진흥과의 연관성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68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김길영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효원,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홍국표 의원(19명)

1. 제안이유

- 2025년 7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으로 시장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스포츠데이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제4조제8호에 추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스포츠데이 활성화
화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8. (생 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에 따른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으로 시장이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 스포츠데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권 봉 수

☎ 02-2180-7953

e-mail : shibedoge0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